

1994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1. 예산(안) 편성방침과 기준 .....	882
2.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 .....	883
가. 예산(안) 총규모 .....	883
나. 세입예산(안) .....	884
다. 세출예산(안) .....	887
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감액 내역 .....	892
3. 검토의견 .....	895

# '94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1. 예산(안) 편성방침과 기준

### 기 본 방 침

- 수해복구 사업비 및 중소기업 정착금 적기 확보
- 중앙지원 사업비 정리
- 법정경비 및 투자사업비 계상

### 편 성 기 준

#### [ 세입예산 ]

- 지방세 추가 징수 전망액 산정계상
-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내시분 계상
- 지방채 승인액 계상
  - 수해복구 사업비
  -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 [ 세출예산 ]

- 기구개편 및 증원분에 대한 필수경비 계상
- 중앙 복구계획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 계상
- 중앙지원 사업분에 대한 도비부담액 계상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성 및 필수사업비 계상

## 2.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

### 가.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731,622,203	100	639,000,032	100	92,622,171	14.5
일반회계	514,520,521	70.3	422,851,157	66.2	91,669,364	21.7
특별회계	217,101,682	29.7	216,148,875	33.8	952,807	0.4

'9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316억 2,220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390억 3만 2천원보다 14.5%인 926억 2,217만 1천원이 증액편성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7%인 916억 6,936만 4천원이 증가한 5,145억 2,052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4%인 9억 5,280만 7천원이 증액된 2,171억 168만 2천원의 규모임.

나. 세입예산(안) 주요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	금액	%	금액	%
합계	731,622,203	100	639,000,032	100	92,622,171	14.5
일반회계	514,520,521	70.3	422,851,157	66.2	91,669,364	21.7
· 지방세	116,496,000	22.6	101,496,000	24.0	15,000,000	14.8
· 세외수입	91,814,706	17.8	91,178,456	21.6	635,250	0.7
- 경상적세외수입	6,042,829	1.2	6,021,379	1.4	21,450	0.4
- 임시적세외수입	85,771,877	16.6	85,157,077	20.2	614,800	0.7
· 지방교부세	135,971,439	26.4	102,735,000	24.3	33,236,439	32.4
· 지방양여금	49,748,234	9.6	49,748,234	11.8	-	-
· 보조금	103,120,142	20.0	77,693,467	18.3	25,426,675	32.7
· 지방채	17,370,000	3.4	-	-	17,370,000	00.0
특별회계	217,101,682	29.7	216,148,875	33.8	952,807	0.4
· 공기업특별회계	196,484,994	90.5	196,308,623	90.8	176,371	-
- 지역개발기금	56,981,008	26.2	56,981,008	26.4	-	-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39,503,986	64.3	139,327,615	64.4	176,311	0.1
· 기타특별회계	20,616,688	9.5	19,840,252	9.2	776,436	3.9
- 의료보호기금	15,251,222	7.0	14,545,519	6.7	705,703	4.9
-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운영관리	1,891,289	0.9	1,820,556	0.8	70,733	3.9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3,474,177	1.6	3,474,177	1.6	-	-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7%인 916억 6,936만 4천원이 증가한 5,145억 2,052만 1천원  
으로서

-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5.5%인 156억 3,625만원이며,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은 65.1%인 586억 6,311만 4천원임.

□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검토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014억 96백만원보다 14.8%인 150억원이 증가된  
1,164억 96백만원으로서,

-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137억 31백만원
- 목적세인 지역개발세 4억 67백만원
- 과년도수입 전당액 8억 2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911억 7,845만 6천원보다 0.7%인 6억 3,625만원이  
증가된 918억 1,470만 6천원으로서,

- 사업장 생산수입 (기타조경수) 2,145만원
- 재산매각수입 (산림환경 연구소 부지매각외 6건) △1억 4,279만 8천원
- 부담금 (야계사방 수해복구) 8,878만 8천원
- 잡수입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추가징수의 8건) 6억 6,881만원  
각각 증감되었음.

-지방채 상환 (수해복구지방비부담금, 지방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173억 70백만원이

증액됨.

-의존수입인 중앙지원재원으로는 기정예산액 2,301억 7,670만 1천원보다  
65.1%인 586억 6,311만 4천원이 증가된 2,888억 3,981만 5천원으로서

- 지방교부세 (지정부교부세 26건) 332억 3,643만 9천원
- 국고보조금 254억 2,667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4%인 9억 5,280만 7천원이 증가한 2,171억 168만 2천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90.5%, 기타특별회계가 9.5%임.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 가경2지구 미분양택지매출 수익 △ 16억원
-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 국민주택 기금차입금 23억원
- 가경2지구 중도계약 해지자 감액분 △ 5억 2,369만 9천원등  
1억 7,63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 의료보호사업도비 부담금 1억 4,114만 1천원
-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5억 6,456만 2천원등  
7억 570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 운영비 부담액 △ 7억 8,342만 7천원
- 이 월 금 8억 4,699만 2천원
- 잡수입인 결산이자 716만 8천원등  
7,073만 3천원이 증액계상됨.

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	금액	%	금액	%
합계	731,622,203	100	639,000,032	100	92,622,171	14.5
일반회계	514,520,521	70.3	422,851,157	66.2	91,669,364	21.7
· 인건비	38,970,532	7.6	38,945,379	9.2	25,153	0.1
· 물건비	27,301,126	5.3	27,020,471	6.4	280,655	1.0
· 이전경비	103,804,908	20.2	98,411,900	23.3	5,393,008	5.5
· 자본지출	324,304,146	63.0	238,520,802	56.4	85,783,344	36.0
· 융자및출자	5,011,500	1.0	4,880,500	1.2	131,000	2.7
· 보전재원	1,075,378	0.3	1,705,378	0.4	-	-
· 내부거래	9,016,562	1.8	8,962,369	2.1	54,193	0.6
· 예비비및기타	4,406,369	0.9	4,404,358	1.0	2,011	0.1
특별회계	217,101,682	29.7	216,148,875	33.8	952,807	0.4
· 지역개발기금	56,981,008	26.2	56,981,008	26.4	-	-
· 공영개발사업	139,503,986	64.3	139,327,615	64.4	176,311	0.1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474,177	1.6	3,474,177	1.6	-	-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청호특별대책 지역	1,891,289	0.9	1,820,556	0.8	70,733	3.9
· 의료보호기금	15,251,222	7.0	14,545,519	6.7	705,703	4.9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28억 5,115만 7천원보다 21.7%인 916억 6,936만 4천원이 증액된  
5,145억 2,052만 1천원 규모임.

□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 인건비는 기정예산의 0.1%인 2,515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전문직 신규인원 10명이 증원된데 기인함.
-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0%인 2억 8,065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내여비 1억 79만원, 국외여비 1억원이 증액된 때문임.
- 이전경비는 기정예산보다 5.5%인 53억 9,300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상금 2,062만원, 출연금 1,000만원, 민간이전 1억 9,636만원, 자치단체이전 48억 1,573만원, 전출금 3억 5,030만원등이 증액된 것임.
- 자본지출이 기정예산보다 36.0%인 857억 8,334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충주과학 산업단지 기본설계용, 농촌진흥원 이전설계,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신축비, 부지매입비, 가축위생시험소 증부지소 신축비, 청주해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 수해복구사업등이 증액된데 기인됨.
- 용자 및 출자는 기정예산보다 2.7%인 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농어주택 개량사업임.
- 보전재원은 증감없음.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0.6%인 5,419만 3천원이 증액된 것은 의료보호기금등 회계상호간 전출에 따른 것임.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0.1%인 201만 1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율 기종별로 보고드리면

- 의회비	3,027만 9천원
- 일반행정비	11억 5,041만 4천원
- 사회복지비	14억 5,245만 5천원
- 산업경제비	137억 9,602만 4천원
- 지역개발비	689억 6,002만 2천원
- 문화 및 체육비	17억 8,267만 9천원
- 민방위비	△ 386만원
- 지원 및 기타경비	45억 135만 1천원

이며,

□ 세출예산을 주요경비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인건비 및 징수교부금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로는

-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	2억 2,600만원
- '94년도 추가징수 교부금	45억원
- 특별회계 전출금 (의료보호기금)	1억 4,100만원
- 경상경비	4억 5,000만원이며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은

- 농촌진흥원 부지매각대	27억 5,000만원
- 중소기업조정자금	86억 7,000만원
- 환원투자사업	3억 1,000만원
- 기금사업	2억 4,000만원
- 지방교부세사업 (수해복구비, 지정교부세)	332억 1,000만원
- 국고보조금 사업 (수해복구비외 18건)	337억 5,000만원

세제, 증점시책투자사업비로는

< 사회복지분야 >	7억 4,000만원
- 보건위생 및 의료제도의 향상(의료원 진료차액 보전의 4건)	4억 4,000만원
- 경노양양 및 여성지위향상 (탁로시설의 4건)	1억 4,000만원
- 폐기물의 위생적 관리 (쓰레기 중량시범지역지원의 1건)	1억 6,000만원
< 문화체육분야 >	13억 3,000만원
- 국민체육진흥 사업(체육회보조의 2건)	4억 4,000만원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3건)	4억 6,000만원
- 문화재보존 (정지용 생가복원의 3건)	4억 3,000만원
< 농수산 및 지역경제분야 >	18억 3,000만원
- 농어촌 구조개선 및 과학 영농기술지원 (농촌종합 개발계획의 9건)	14억 5,000만원
-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조정 자금위탁수수료의 1건)	3억 8,000만원
< 지역개발분야 >	42억 3,000만원
- 상위도로와 연계한 도로개설사업 (청원 두모 ~ 죽암간 도로 확포장의 17건)	38억 4,000만원
- 농어촌지역의 불량·노후주택 개량	3억 9,000만원
< 일반행정분야 >	5억 9,000만원
-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의 8건	5억 6,000만원
- 증계소 철탑공사의 2건	3,000만원

넷째, 경정재원으로는

- 기정예산에서 사업여건의 변동이나 계획취소로 인한 묘지공원화 사업등 32개 사업에서 14억여원을 감액하여 경정재원으로 계상

다섯째, 채무부담사업으로는

- '95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444억여원
- 여성회관 신축사업재원 확보 21억여원

□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 공기업특별회계는

- 청사설계용역 부족분 1억 4,000만원
  - 국민주택 기금이자 2,000만원
  - 미분양택지 분양공고료 2,000만원
- 각각 계상하였음.

○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 시군의료보호진료비 7억원

○ 대청호 특별회계는

- 하수처리장 및 간이 오수장 운영비 7,000만원

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감액 내역

-기정예산액의 50%이상 감액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실수별	사업비 및 경비내역	예산액	기정예산액	감액
합계	4건	2,257,568	7,998,136	5,740,568
농어촌개발국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	0	4,200,000	4,200,000
	보건진료원 교육부장	7,568	15,136	7,568
	발기반 정비사업	2,250,000	3,615,000	1,365,000
내무국	옥천실내체육관 건립	0	168,000	168,000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실 국 별	사업비 및 경비내역	예 산 액	기정예산액	감 액
합 계	30건	42,708	1,671,317	1,628,609
기획관리실	지역총생산후계조사비	0	5,000	5,000
	일반 업무용 통신장비	0	9,800	9,800
	행정전산망 및 도로정보 통신망 장비구입	8,520	37,000	22,180
지역경제국	중요기업 공동브랜드 개발비	0	50,000	50,000
	신제품 개발전문기술지도 요원 보상금외 2건	0	211,500	211,500
	도내 중소기업 제품가격 정보지배포	0	4,000	4,000
	외국경제인초청투자설명회	0	25,000	25,000
내 무 국	직원영화상영기구 임차료	300	3,600	3,300
	주요 의전 행사 종사원 피복비	0	4,500	4,500
	공로연수 공무원 부인 해외연수 항공료	9,500	19,500	10,000
	조진진단 용역비	0	55,000	55,000
	문화재 재단 원고 감수료	10,000	47,220	37,220
	옥천 실내체육관 건립	0	168,000	168,000
	교육프로그램개발(경정감)	0	30,000	30,000
소 방 본 부	제천소방서 이전대체 농지 조성비	0	12,060	12,060
증평출장소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0	1,000	1,000
	군도정비 사업비	0	72,450	72,450
	프린터기	0	3,000	3,000

(단위 : 천원)

실 국 별	사업비 및 경비내역	예 산 액	기정예산액	감 액
가정복지국	시설아동종사자 체육대회 시상금	0	2,800	2,800
	묘지공원화 시범 사업	0	480,000	480,000
농 정 국	제2녹색지대 행사참가자 보상	0	6,660	6,660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비	0	3,500	3,500
	달수어 직관장 개설	0	61,500	61,500
	유우 자동 잠금장치	0	35,000	35,000
	자동물먹이 장치	0	1,250	1,250
	연가보상금	14,388	172,657	158,269
건설도시국	과산계월제 개선사업	0	134,120	134,120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비	0	4,000	4,000
의회사무처	의정백서 발간	0	17,500	17,500

### 3. 검토의견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된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투자 방향은 수해복구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구조 조정사업에 중점투자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기본내용으로 되어있음.

특히 수해복구 사업과 중소기업구조 조정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추경재원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엿볼 수 있음.

#### 1 중소기업구조 조정사업추진

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점육성하고자 금회 추경예산에 86억 7천만원을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기금출연으로 계상한 것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적극성을 띤 예산조치라고 생각됨.

그러나 재원 전액이 기채로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지원대상업체 선정에서부터 사업 타당성검토와 자금운용관리에 이르기까지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 포괄적 예산편성 지양

과거 예산 편성시 예산 각 항목별 명세서에는 일부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내용이 명기되지 않고 포괄적,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예산편성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

금회 추경에서도 일부 비목(여비)의 경우 행정편의상 그 관행이 답습되고 있는바, 예산심사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려면 편성예산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금회 추경예산에서도 포괄 계상된 부문은 산출기초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3. 청사신축 설계용역 발주 지연

공영개발 사업단의 가경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3,790만원을 반영한데 이어 건축사 보수기준인상 요인으로 인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1억 3,78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2억 7,570만원이 설계 용역비로 편성되었음.

건축사 보수기준이 인상된 시점은 작년 12월이고,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은 4월에 실시하였음에도 1회 추경에 용역비 진액을 반영치 못하여 3/4분기가 지나도록 설계용역 발주를 지연시킨것은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4. 예산감액 사업 과다발생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을 50%이상 감액하거나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취소 하여 기 확보된 예산을 감액 조치한 사업건수와 예산액은 세입·세출 총 34건 (11P ~ 13P내역참조)에 75억 6,917만 7천원으로 가용예산을 6개월내지 10개월동안 사장시킨 결과를 가져왔음.

당초 예산편성시나 집행시 세심한 분석과 검토가 있었다면 여사한 예산감액사례와 사업계획 변경·취소 사례는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었을 것임.

앞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취소하거나 예산을 감액 할 경우에는 예산을 심의의결한 의회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라도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